

의안번호	제 62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 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) ①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(이하 이 조에서 “특구”라 한다) 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·임대(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(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·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②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(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)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<u>감면) ① 「연구개발특구의 육 성</u>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<u>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</u> <u>연구개발특구(이하 이 조에서</u> <u>“특구”라 한다) 지역을 개발·조</u> <u>성하여 분양·임대(같은 법에 따</u> <u>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</u> <u>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할 목</u> <u>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</u> <u>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</u> <u>진흥재단이 직접 사용(법 제2조</u> <u>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</u> <u>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이</u> <u>하 이 항에서 같다)할 목적으로</u> <u>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</u> <u>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</u> <u>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</u> <u>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</u> <u>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</u> <u>한다.</u></p> <p>1.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·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② 「<u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<u>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(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~⑧ 생략

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제14조(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,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
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3. 「초지법」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4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5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
6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

접용료 · 사용료

7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

[전문개정 2012. 1. 26.]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· 자금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(이하 "외국투자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,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·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 · 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2. 1. 26.]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

3. 관련조문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 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산출근거 : 부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(과세표준) × 세율
(취득세, 지방교육세) 4.4% = 세액
 -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연구기관, 첨단 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연구기관 입주(부지 및 건축물 취득)
- 산출과정 : 50억원(과표) × 4.4%(세율) = 2.2억원
 - 토 지 : 2,000㎡ × 200,000원 = 4억원
 - 건축물 : 2,300㎡ × 2,000,000원 = 46억원

- ▶ 대상지역 공시지가 : 평균 200천원/m² 정도(오창읍 송대리)
- ▶ 건축비 : 국토부 고시 2020년도 표준건축비 2,000천원/m²

나. 추계 결과 : 6억 6천만원

<3년간 지방세 감면 추정금액>

(단위: 억원)

	'21	'22	'23	총액
예상 수혜자	0	1	2	3
취득가액	0	50	100	150
과세표준	0	50	100	150
산출세액	0	2.2	4.4	6.6
지방세 감면 예상액	0	2.2	4.4	6.6

5. 작성자 : 세정담당관 세무7급 이재민